第304回國會
(臨時會)

平昌冬季올림픽및國際競技大會支援特別委員會會議錄

第 14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1年12月26日(月)

場 所 文化體育觀光放送通信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계속)
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계속)
3.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계속)
4.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계속)
5.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계속)
6.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7.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審査된案件

1.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김학송・윤석용・김소남・유승민・이진복・김장수・손범규・김무성・한기호・김성회・이인기・김옥이・김동성・원유철・황진하・정하균・정수성・노철래・장윤석・성윤환・정해걸・강석호・김광림・이철우 의원 발의)(계속) ····· 2
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윤영・김금래・손숙미・강승규・이경재・최인기・한선교・이낙연・안형환・박준선・김성동・진성호 의원 발의)(계속) ····· 2
3.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박준선・백성운・유정복・차명진・나성린・신상진・조진래・정진섭・김정권・유정현・김영우・안형환・배은희・원희목・김성태・김성동・윤상현・신지호・신성범・강승규・이병석・유기준・강석호・이한성・임동규・이군현・이윤성・장제원・김재경・안경률・허천・성윤환・한기호・이종혁・김태환・최연희・김낙성・정하균・이재오・정의화 의원 발의)(계속) ····· 2
4.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이윤성・김태원・김선동・김정권・나성린・신성범・김세연・유정현・김무성・윤영・유재중・강승규・권영진・이한성・윤상현・김성식・권택기・진성호・서병수・강명순・홍사덕・이종혁・유성엽・정태근 의원 발의)(계속) ····· 2
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최종원 의원 대표발의)(최종원・손학규・김진표・김우남・강기정・안민석・양승조・최영희・변재일・김재윤・이용섭・장병완・장세환・

김상희·이종걸·조영택·천정배·정장선·강창일·백재현·김학재·박주선·송훈석·주승용·유선호·이석현·김재균·이성남·이춘석·박은수·박우순·신건·안규백·김부겸·박지원·전현희·전혜숙·전병헌 의원 발의)(계속) ····· 2
6.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2
7.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홍영표·백재현·우제창·김충조·유선호·최재성·김영환·강창일·손학규 의원 발의)(계속) ····· 2
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
9.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재 위원 대표발의)(이경재·김재균·김영진·강기정·조영택·이용섭·이명규·배영식·홍사덕·서상기·김효재·김금래·이해봉·이한구·윤상현·최구식·성윤환·홍일표·안형환·진성호·송훈석·허원제·주성영·이학재·조전혁·김을동 의원 발의)(계속) ····· 3
1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위원 대표발의)(이시종·김진표·임영호·유성엽·강창일·김성곤·노영민·홍재형·변재일·송광호·이용희 의원 발의)(계속) ····· 3
1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11시44분 개의)

○위원장 이해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4차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이한성·김학송·윤석용·김소남·유승민·이진복·김장수·손범규·김무성· 한기호·김성회·이인기·김옥이·김동성·원유철·황진하·정하균·정수성·노철래·장윤석·성윤환·정해걸·강석호·김광림·이철우 의원 발의)(계속)
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윤영·김금래·손숙미·강승규·이경재·최인기·한선교·이낙연·안형환·박준선·김성동·진성호 의원 발의)(계속)
3.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박준선·백성운·유정복·차명진·나성린·신상진·조진래·정진섭·김정권·유정현·김영우·안형환·배은희·원희목·김성태·김성동·윤상현·신지호·신성범·강승규·이병석·유기준·강석호·이한성·임동규·이군현·이윤성·장제원·김재경·안경률·허천·성윤환·한기호·이종혁·김태환·최연희·김낙성·정하균·이재오·정의화 의원 발의)(계속)
4.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이윤성·김태원·김선동·김정권·나성린·신성범·김세연·유정현·김무성·윤영·유재중·강승규·권영진·이한성·윤상현·김성식·권택기·진성호·서병수·강명순·홍사덕·이종혁·유성엽·정태근 의원 발의)(계속)
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최종원 의원 대표발의)(최종원·손학규·김진표·김우남·강기정·안민석·양승조·최영희·변재일·김재윤·이용섭·장병완·장세환·김상희·이종걸·조영택·천정배·정장선·강창일·백재현·김학재·박주선·송훈석·주승용·유선호·이석현·김재균·이성남·이춘석·박은수·박우순·신건·안규백·김부겸·박지원·전현희·전혜숙·전병헌 의원 발의)(계속)
6.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7.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홍영표·백재현·우제창·김충조·유선호·최재성·김영환·강창일·손학규 의원 발의)(계속)

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9.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재 위원 대표발의)(이경재·김재균·김영진·강기정·조영택·이용섭·이명규·배영식·홍사덕·서상기·김효재·김금래·이해봉·이한구·윤상현·최구식·성윤환·홍일표·안형환·진성호·송훈석·허원제·주성영·이학재·조전혁·김을동 의원 발의)(계속)

1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위원 대표발의)(이시종·김진표·임영호·유성엽·강창일·김성곤·노영민·홍재형·변재일·송광호·이용희 의원 발의)(계속)

1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이해봉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는 법률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계속) 등 총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법안심사소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이 하나도 아니고 11개의 중요한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고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학용 위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신학용 법안심사소위원회 민주당 신학용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제 복장이 감기로 인해서 부득이 이렇게 된 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세 차례의 회의를 갖고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계속) 등을 다음과 같이 의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계속)은 원활한 대회관련시설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대회 개최지 시장·군수의 협의체 구성 및 경상북도지사의 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윤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계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승인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대회조직위원회는 대회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회 평가 결과를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문화부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계속),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계속), 최종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계속)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평창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가 환경·문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 및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회관련시설에 식수 전용 저수지 및 상수도시설을 포함하고 경기장 및 진입도로를 산지관리법상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였으며 경기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75%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려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강원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동계올림픽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특구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및 부담금 감면과 국·공유재산 특례 등을 규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회관련시설 및 특구개발사업 시행자가 강원도 지역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프레대회 지원 근거와 대테러대책기구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 또는 권고하는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선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나 대회개최권과 관련하여 조직위원회와 대회운영기업의 관계가 명확히 조정된 후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봉 법안소위 심사 위원이신 신학용 위원께서 심사 결과를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체로 모두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은 소위원회에서 다 개진됐다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의견을 듣는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마는, 의결 순서가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의결정족수가 차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국회가 모두 바빠서 위원들이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듣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심사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부터 시작해서 법률안 하나하나를 축조심의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은 제정법률안입니다.

원칙적으로 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할 대상입니다마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 일정상 동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시므로 우선 공청회 생략에 관련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부터 제20조(잔여재산의 귀속)까지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1조(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로부터 부칙까지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박병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지원에 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 제정법률안이 공청회도 없고, 그리고 위원들이 갑자기 모인 상태에서 축조심의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법률의 부실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거쳐서 다음 기회에 통과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해봉 신학용 위원, 말씀 계십니까?

○소위원장 신학용 저희들도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우선 이한성 위원님이……

○박병석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경기 개최가 2015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박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음 국회가 더 있는데 위원들이 최소한 한 번 읽어 보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지 공청회도 생략했는데 전체회의에서 갑자기 축조심의라는 명목하에 검토 없이 넘어가는 것은 국회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지한 검토를 거쳐서 다음 위원회 때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해봉 이한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성 위원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법상 요구되는 사항입니다마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사실 뒤에 나오는 의사일정 제2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과 같이 약간 천편일률적인 그런 경기대회에, 문경에 해당되는 지역적인 사항을 반영해서 제정된 법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소위에서도 아무런 논란이 없었습니다. 이게 공청회할 대상까지 아니고, 국방부에 지금 물어보시면 잘 아실 내용이고 논란이 크게 있어야 하지, 다른 지원법안과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형식에 맞추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군사 부분만 반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법안소위에서도 아무런 논란도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박병석 위원님께서 혜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급한 이유가 물론 시간이 한 3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이제 2012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직위원회가 이 법 때문에 구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시간을 다투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수백 조 되는 조문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좀……

박병석 위원께서 보아 오신 여러 가지 법률 틀에 맞추어서 문경에 해당되는 그 조문만 반영한 아주 쉽고 간명한 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봉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권성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해봉 말씀하세요.

○권성동 위원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의견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처리해야 될 이 법안들 내용이 기존에 있는 국제경기지원법의 틀에 맞추어서 그 경기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었을 뿐 내용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우선 첫째로 아니고요.

두 번째로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이번 국회 내에서 본회의까지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내년도 2월에 임시국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회가 제대로 열릴지도 지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소위 위원들이 철저하게 심사를 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박 위원님께서 오늘 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 위원 주무장관인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 법은 2015년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사실상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할 성격이 있고 소위에서 충분히 검토했음을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봉 그러면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토의도 있었고 정부 견해도 있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우리 박병석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또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신다는 말씀도 계셨고, 그러나 다만 조금 전에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고 연말 일정에다가 또 뒤에 있는 다른 법률들이 전부 다 공청회를 사실 해야 될 법률인데 일정상 생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석 위원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그 취지는 전적으로 옳다고 보고, 또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은 속기록에 남기기로 하고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은 제정법률안입니다.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서 공청회 개최 대

상이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일정상 동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법률이 어떤 면에서 제일 중요한 법률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유치된 국제경기대회는 특별법으로서 모두 다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법률은 앞으로 지금까지 유치된 대회 말고 신규로 유치되는 대회는 전부 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의 적용을 받는 일반법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법률입니다.

먼저 제1조(목적)부터 제21조(수수료 등)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2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부터 부칙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서 축조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역시 제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대상입니다마는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일정상 동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부터 제26조(대회지원위원회)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7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부터 제60조(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6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부터 부칙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서 축조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계속), 의사일정 제4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계속), 의사일정 제5항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계속),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국회법 제58조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건과 의사일정 제9항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의사일정 제10항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

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들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관진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존경하는 이해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이한성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본 특위에서 의결하여 주신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봉 김관진 국방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이해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 등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은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며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준비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뜻 깊은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구촌 최대 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을 신속히 준비할 수 있도록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법 제정을 서둘러 주신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문체부의 입장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율 상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것을 보조금법에 관련시켜서 상충되는 문제가 있고 아울러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는 정부 승인 없이 유치된 국제대회인 만큼 이것을 사후에 승인하면 앞으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는 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남북화해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할 때마다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행정낭비를 개선하고 국제경기대회 지원 등에 대한 일반원칙을 확립시키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정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봉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박병석 위원 민주당 대전 서구갑의 박병석 위원입니다.

각종 국제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원만히 개최되기를 희망합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단순한 경기 한 번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참여와 성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점을 하나 강조 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무부처나 또는 경기단체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과시성 경기대회를 하는 것에 관해서 주무부처도 철저히 이를 견제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과도한 예산을 요청하거나 또는 이미 선집행하고 차후에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제재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과, 그리고 미래라는 점에서 반드시 책임감을 갖고 접근하시고 통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봉 고맙습니다.

지금 박병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가 듣기로도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항상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각종 경기대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 말씀하신 75% 정부 지원 입장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만 평창동계올림픽대회는 단순한 국제경기대회를 우리가 유치한 것이 아니고 전 국민들의 성원 속에서 몇 년 동안 노력해서 유치한 대회입니다.

또 두 번째는 국제경기대회라는 측면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이 나라 국토의 균형개발, 지방의 균형개발 이런 측면이 대단히 강조되어야 할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비 75% 지원은 대단히 타당하다 하는 것을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인천 프레대회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 장관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어떤 대회도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유치할 수 없도록 국제경기 유치 일반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법을 통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통제도 할 수 있고 승인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반법 통과로써 또 오늘 다른 법률 통과로써 인천 프레대회 같은 이런 대회에 관련해서는 말끔히 우리가 그 문제점을 씻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점도 정부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평창특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안을 만들은 데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위원장으로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국제경기 일반법을 만들었다는 데 여기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일반법을 잘 활용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지방자치단체가 남발하고 있는 그런 대회들을 잘 통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광식 문화체육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더더군다나 소위 심사를 해 주시고 오늘 또 의결정족수 채워 주시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권성동	노영민	박병석	신학용
윤석용	이한성	이해봉	최종원
황영철			

○청가 위원(1인)

이용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전문위원	석영환
입법심의관	박명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장관	김관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